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김성준 부위원장님  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운 의원입니다.
- ‘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.
- 긴급한 상황에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교통혼잡 가중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위협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예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- 그리고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미이행 후 시정명령 후에만 보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 공사시행자에게 소통개선대책 준수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시장이 공익을 위해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친 후 「도로법」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여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공사시행자에게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조례 제정 취지처럼, 도로를 점용하여 진행하는 공사 시 발

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,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게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